

정부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전제로 꼭 필요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7.23.(목) 중앙일보, “특별연장근로 신청, 뭐 이리 복잡하나” ... <5인 이상 기업 80만곳> 99.7%가 포기

2. 설명 내용

- 5인 이상 기업 80만개소 중 99.7%가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 - 5인 이상 기업 80만개소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곳은 '25년 말 기준 2,274개소로, 이들 중 2,185개소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중으로, 인가율은 96%임
 - * 인가를 신청하였으나, 발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볼 수 없거나, 신규 채용 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만 불승인
-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, 주4.5일제 등 노사의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,
 - 업무량 폭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노동자 건강보호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중임
 - * (노동자 건강보호조치) 휴식시간, 건강검진 실시 등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
 - ↳ ①특별연장근로시간 1주 8시간 이내, ②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,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일 이상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

-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비율이 전체 인가 사업장의 약 82%('25년)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업무량 변동이 클 수 있는 중소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시급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
* 30인 미만 사업장 활용비율이 31.0%로 가장 높음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박노완 (044-202-7618) 김동환 (044-202-7982)

